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20년 2월 | 2020/02호

## 긴급공지 (2020. 3. 30.):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사무국에서의 종이 서류 송부 및 접수에 관한 정보

코로나 19 팬데믹이 국제사무국의 운영과 전 세계 우편 제도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국제사무국(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 RO/IB 포함)이 PCT 서식과 서한 등의 PCT 문서의 **서면** 송부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출원인 및 대리인과 통신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고자 국제사무국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메일로만 문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개별 출원과 관련된 PCT 관련 문서는 [ePCT](#) 또는 [PATENTSCOPE](#)(국제공개 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이메일 주소를 아직 국제사무국에 제공하지 않은 PCT 사용자께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해당 정보를 긴급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i) 미결 국제출원 중 한 건에 관하여 해당 정보를 [ePCT](#) 상에서 직접 입력(그 국제출원에 대한 해당 접근권한이 있는 경우)
- (ii) [PCT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를 이용
- (iii) [pct.eservices@wipo.int](mailto:pct.eservices@wipo.int) 또는 [pct.infoline@wipo.int](mailto:pct.infoline@wipo.int) 로 이메일 전송
- (iv) [WIPO \(PCT\) 문의하기 페이지](#)를 이용

ePCT 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이 [웹페이지](#)와 ePCT [FAQ](#)(영문)를 참조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pct.eservices@wipo.int](mailto:pct.eservices@wipo.int)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사무국에서 우편 및 스캔 업무가 축소 운영됨에 따라 모든 PCT 사용자께서는 국제사무국과 통신하는 데 전자적 수단만을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제사무국과 전자적으로 통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ePCT](#) 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드리드 및 헤이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등록 시스템의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뉴스레터와 지난 호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국제기관회의(MIA)

제 27 차 PCT 국제기관회의가 2020 년 2 월 6 일과 7 일 양일간 캐나다 가티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의장의 요약서(Summary by the Chair)와 작업 문서는 아래 WIPO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009](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009)

의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품질 하위그룹(Quality Subgroup)의 회의 결과. 해당 결과에는 2020 년 7 월 1 일 공포될 예정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다음 버전에 발명의 단일성의 변경된 예시를 추가하는 데 대한 동의와, 품질관리에 대한 추가 작업에 대한 권고사항이 포함. 추가 세부내용은 의장의 요약서를 참고하십시오(문서 PCT/MIA/27/16 의 부속서 II).
- 유럽 특허청이 이끌고 있는 PCT 최소문헌 전담반(TF)의 현황보고서(문서 PCT/MIA/27/11 및 12). 국제기관회의에서는, 해당 전담반이 추가 회동하여 특허문헌 모음(patent collections)과 비특허문헌을 PCT 최소문헌에 편입시키기 위한 기준 및 표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
- PCT 절차에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일본 특허청의 제안(문서 PCT/MIA/27/10).
- 지정관청으로서의 영국 지식재산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캐나다 지식재산청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 시범사업에 관한 보고서(문서 PCT/MIA/27/3).
- 국제사무국을 통해 국제조사기관으로 조사료 이체 시 관청들과 국제사무국 간 송금되는 금액의 차이에 대해 "네팅(netting, 상계)"을 도입한 WIPO 수수료 이체 서비스(WIPO Fee Transfer Service)에 관한 보고서(문서 PCT/MIA/27/7).
-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에 관한 WIPO 표준 ST.25 에서 XML 기반의 WIPO 표준 ST.26 로의 이행과, PCT 에서 ST.26 의 시행(문서 PCT/MIA/27/8 및 9).
- 2018 년 7 월 시작된 IP5 관청들 간 협력심사(CS&E)의 제 3 차 시범사업의 운영단계. 2020 년 7 월 1 일부터는 시범사업에 추가 출원을 접수하지 않으며 기관들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고, 이는 시범사업의 일부였던 건들의 국내단계 결과를 포함함 (문서 PCT/MIA/27/13).

- 보충적 국제조사제도(supplementary international search system). 2020 년 9 월에 개최되는 PCT 총회에서 검토할 예정(문서 PCT/MIA/27/5).
- 국제출원 내 도면의 방식상 흠결의 처리 개선을 위한 미국 특허상표청의 제안(document PCT/MIA/27/14).
-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들을 국제사무국에 별도의 문서로 송부하는 것에 대한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의 제안(문서 PCT/MIA/27/4).
- 심사관과 출원인, 제 3 자를 포함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의 제공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집하여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개선하자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의 제안(문서 PCT/MIA/27/15).
- 국제기관들이 모든 PCT 체약국의 수리관청에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할 것을 선언하도록 독려하고, 수리관청들이 자국 관청에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 이러한 기관들을 모두 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할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자는 인도 특허청의 제안(문서 PCT/MIA/27/6).
- 각 기관은 최근 국제사무국에서 출원인과 수리관청, 국제기관, 제 3 자들이 사용하도록 다양한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했습니다(문서 PCT/MIA/27/2). 또한 각 기관은, 출원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 바로 활용하도록 XML 형식으로 더 많은 정보를 생성하고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등, 효율성 증대와 자동화 확대를 위한 PCT 온라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제사무국에서 파악한 우선과제들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및 기술 표준 개발에 있어, PCT 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사무국과 관청들 간 공조 개선의 필요성에도 동의했습니다.

## 영국: 유럽 연합 탈퇴 후 영국의 유럽특허기구 회원국 지위에 관한 내용

2020 년 1 월 31 일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에 따라, 유럽 특허청에서는 영국의 유럽특허기구 회원국 지위와, 유럽 특허청에서의 영국의 대리인(professional representative) 및 법률 전문가(legal practitioner)의 지위에 관해 다음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영국의 유럽특허기구 회원국 지위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는, 유럽 연합과 독립된 국제기구로서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따른 38 개 체약국이 속한 유럽특허기구 내 영국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특허협약과 PCT 에 따른 절차들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서 서식(서식 PCT/RO/101) 내 유럽(EP)의 지정에는 앞으로도 영국(GB)이 포함됩니다. 나아가, 영국 국민 및/또는 거주자인 출원인도 계속해서 수리관청으로서의 (영국 지식재산청<sup>1</sup> 및 국제사무국 외에) 유럽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sup>1</sup>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는 영국 특허청의 기관명

## 영국의 대리인 및 법률 전문가의 지위

유럽 특허청에서의 대리(representation)에 관한 원칙 또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유럽특허협약 제 134 조 제 2 항에 따라 유럽 특허청 대리인 목록에 등재된 영국의 유럽변리사들은, 유럽특허협약에 따라 수립된 절차가 시행될 수 있는 국가들, 즉, 독일과 네덜란드 중 어느 곳에서든 업무 허가증이 없어도 구두 변론을 포함한 유럽 특허청에서의 절차에서 고객을 대리할 충분한 자격을 계속해서 갖습니다. 또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는 유럽 특허청 대리인 목록에 등재해달라는 영국의 대리인 후보들의 향후 요청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자격을 갖추고 영국에 영업소를 둔, 영국에서 특허 관련하여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 같은 법률 전문가들도 유럽 특허청에서의 절차에서 당사자들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유럽특허협약 제 134 조 제 8 항).

나아가, 영국 대리인들은 유럽특허협약 제 134 조 제 6 항에 따라, 유럽특허협약에 따른 절차가 시행될 수 있는 유럽특허협약의 어느 체약국에든 영업소를 둔 자격을 계속해서 갖습니다. 다만, 비자 요건에 관한 규정과 같이 유럽 연합 회원국의 영토에의 진입 및 거주를 관장하는 규정은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 내용은, 유럽 특허청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PO) 2 월호에 게재될 2020 년 1 월 29 일자 유럽 특허청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지사항은 아래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html](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html)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PCT 체약국에서 PCT 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호의 종류" 표

PCT 웹사이트에 나온 표들 간 통일성을 위해, PDF 형식으로 제공되던 상기 표를 이용자 편의를 위해 HTML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표는 2020 년 1 월 2 일부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해당 표의 새로운 링크(영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typesprotection.html](http://www.wipo.int/pct/en/texts/typesprotection.html)

### PCT 출원인 가이드 (영어 및 프랑스어, 러시아어 버전)

PCT 출원인 가이드 내, PCT 국제단계가 자세히 설명된 "국제단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Phase)" 부분의 영어와 프랑스어, 러시아어 버전이 2020 년 1 월 13 일 업데이트되어 아래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영어)

[www.wipo.int/pct/fr/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fr/guide/index.html) (프랑스어)

[www.wipo.int/pct/ru/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ru/guide/index.html) (러시아어)

스페인어 업데이트 버전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 한국어로 제공되는 추가 자료

PCT 최근 동향 및 2020 년 변경사항에 관해 2020 년 1 월 31 일 방송된 웨비나의 한국어 PPT 자료와 영상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http://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

## PATENTSCOPE 소식

### PCT 패밀리 특허

이제 PATENTSCOPE 에서 PCT 출원의 패밀리 특허 관련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구체화(Refine Options)" 아래 새로 생긴 옵션을 선택하면 같은 패밀리에 속한 특허들을 보실 수 있고, "PCT 패밀리(PCT family)"라는 표시가 해당 문서에 나타납니다.

PATENTSCOPE 에 포함된 2 백 7 십만 개가 넘는 고유한 PCT 패밀리 특허 각각에는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패밀리를 대표하는 주요 출원으로 간주되는 PCT 출원
- PCT 선출원을 명시한 국내출원
- 국내단계 진입 기록
- 해당 PCT 출원의 고유한 최초의 공개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priority application)

### 새로운 선진특허분류(CPC) 검색 필드

또한 PATENTSCOPE 에서는 선진특허분류(CPC2) 검색 필드가 새로 제공됩니다. 이로써 PATENTSCOPE 에는 4 천만 건이 넘는 개별 출원에 해당되는 2 억 개가 넘는 CPC 코드가 등재되어 있으며, PCT 출원의 99%가 이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 검색결과 개선

아랍어, 불가리아어, 덴마크어, 에스토니아어, 독일어, 그리스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들에 대한 어간추출(stemming)이 개선되어 보다 관련성 높은 검색결과가 제공됩니다. 어간추출은 키워드의 어근 형태를 활용해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electrica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electricity", "electric"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서가 검색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을 설명하는 웨비나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meetings/en/topic.jsp?group\\_id=312&items=20](http://www.wipo.int/meetings/en/topic.jsp?group_id=312&items=20)

<sup>2</sup> 유럽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이 공동 개발한 특허 분류.

## WIPO 의 새로운 IP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WIPO 는 올해 안에 새로운 디지털 IP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에 여러분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고자 합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발명자와 저작자, 개인과 사업체가 자신의 가치 있는 디지털 IP 자산을 지키도록 추가적인 보호(**safekeeping**)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여러분의 PCT 출원뿐만 아니라 상표 출원(마드리드 시스템)이나 디자인 출원(헤이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기존의 IP 전략을 보완해줍니다.

서비스 출시에 앞서 영어로 진행되는 해당 설문조사는 완료까지 10 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분의 분야에서 이러한 종류의 IP 서비스의 활용과, 서비스의 주요 특징, 일부 마케팅적 요소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조사를 완료하시면 새로운 서비스가 형태를 갖추는 데 일조하시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urveys.ipsosinteractive.com/surveys/?pid=S20001884&Qsource=1&id=>

## 유용한 도움말

### "적절한 주의(due care)" 기준에 따른 우선권 회복 요건의 충족

**Q:** 저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12 개월의 우선권 기간 내에 국제출원을 하지 못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고 이틀 뒤에야 국제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국내단계에 진입하고자 하는 지정관청들에서는 우선권을 회복하려면 출원인이 해당 정황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권 기간 내에 출원을 하지 못한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준을 확인하는 수리관청이 이 적절한 주의 기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을 최대화하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 적절한 주의가 기울여졌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A:** 우선권 회복 신청 방법에 대한 모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난 PCT 뉴스레터 2015/09 호에 나와있습니다.

[www.wipo.int/edocs/pctndocs/en/2015/pct\\_news\\_2015\\_9.pdf](http://www.wipo.int/edocs/pctndocs/en/2015/pct_news_2015_9.pdf)

출원서 서식(PCT/RO/101) 제 6 기재란에 작성하거나 PCT 규칙 26 의 2.3(e)에 따른 적용 가능한 기한<sup>3</sup> 내에 수리관청에 서신을 보내서 우선권 회복 신청을 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우선권 기간 내에 국제출원을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의 기재(statement of reasons)"를 동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PCT 규칙 26 의 2.3(b)(ii)). 이러한 이유의 기재에는 출원인께서 충족하고자 하는 우선권 회복 기준이 참작되어야 하고, 해당 기재를 뒷받침하는 선언이나 기타 증거가 첨부되는 것이 좋습니다(PCT 규칙 26 의 2.3(b)(iii)).

적절한 주의 기준을 충족하려면(이보다 덜 엄격한 기준인 "비고의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선언으로 충분), 이유의 기재에 출원 지연을 야기한 구체적 사실 및 정황과, 해당 국제출원을 제때에 하기 위해 취한 모든 시정 또는 대안조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보통 PCT 규칙 26 의 2.3(a)(i)의 의미에 부합하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신중한 출원인이라면 취했을 모든 조치를 출원인이 취한 경우에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신중한 출원인이 기울였을 적절한 주의를 해당 출원인이 기울였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수리관청은 각 특정 건별로 사실과 정황을 고려합니다. 출원인이 일반적으로 국제출원 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해당 특정 출원을 위해 출원인이 모든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리관청에서는 우선권 기간의 만료까지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과 관계된 출원인의 구체적 행위들을 사실에 기반해 분석할 것입니다.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출원인과 대리인 둘 다 적절한 주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출원인의 경우에는, 보통은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주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합니다.

각 수리관청이 자체적으로 건별 분석을 수행하지만,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www.wipo.int/pct/en/texts/pdf/ro.pdf](http://www.wipo.int/pct/en/texts/pdf/ro.pdf))에 수리관청이 적절한 주의 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나온 예들을 보시면 질문하신 출원인의 상황에서 이유의 기재가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고, 해당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가 있다면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권 기간 충족 실패의 원인이, 대리인이나 출원인의, 특정 행정업무를 맡은 행정직원(조수(assistant)나 법률사무소 직원(paralegal) 등 변리사가 아닌 자)의 인적 과오에 있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해당됩니다.

"신중한 출원인이나 대리인은 신뢰할 수 있고 숙련되며 적절히 훈련되고 감독받은 직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훈련하며 그러한 직원의 업무수행을 신중히 감시한다. 국제출원의 처리 예정 기록(docketing), 모니터링, 작성 또는 제출 시 조수가 저지른 인적과오는,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해당 조수의 관리에 있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고 본 특정 건에 있어 우선권 기간 내 출원하지 못한 것이 단 한 번의 인적 과오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출원인이나 대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출원인이나 대리인은 보통 이유의 기재에 해당 조수가 해당

<sup>3</sup> PCT 규칙 26 의 2.3(e)에 따른 기한은 우선권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두 달인데, 이보다 빨리 국제출원 조기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이 됨.

특정 업무를 맡은 헛수와, 해당 조수에게 제공한 훈련과 감독의 수준과, 해당 조수가 과거에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기재한다."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166M(f) 단락]

우선권 기간 내 국제출원을 하지 못하는 통상적인 이유의 추가적인 예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en/texts/ro/ro166a\\_166t.html#\\_166m](http://www.wipo.int/pct/en/texts/ro/ro166a_166t.html#_166m)

개인 발명자나 중소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모든 출원인이나 대리인은 이 분야의 모범사례에 상응하는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주의 환기(reminder), 감독 및 백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리관청에서 출원인이 제공한 이유의 기재와 증거가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수리관청은, 우선권 회복 신청을 거절하기 전에 서식 PCT/RO/158(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거절 의사 통지 및/또는 선언서 또는 기타 증거 제출 요구서)을 발행함으로써, 출원인에게 우선권 회복 거절 의사를 알리고 출원인이 해당 관청이 정한 (추가) 기한 내에 의견, 증거 또는 선언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관청은 접수된 답변을 토대로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고 서식 PCT/RO/159(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발행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유가 불충분하면 상기된 바와 같이 보충이 가능하지만, PCT 규칙 26 의 2.3(e)에 명시된 기한 동안 이유의 기재가 아예 제공되지 않으면, **보통 수리관청에서는 이유의 기재 누락을 우선권 회복 신청 거절의 이유로 들며 신청을 거절**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무국이 우선권 회복 신청 관련 증거로 수리관청에 제출된 기밀문서를 공개할 가능성이 우려되시면, 해당 수리관청은, 기밀문서로 간주되는 그러한 증거를 출원인의 이유를 포함한 신청의 수리 또는 독자적 결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정보는 결과적으로 대중에 공개되지 않습니다(PCT 규칙 26 의 2.3(h) 의 2)). 해당 규칙에 적용 가능한 정보의 예로, 질환의 성질을 설명하는 진단서나, 법률사무소 직원의 이름과 같은,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 지연과 관련된 사람의 신상명세가 있습니다. 수리관청이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데 불필요한 그러한 기밀정보를 처음부터 해당 문서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관청들이 우선권 회복 신청을 수리하고, 하나의 기준만 적용한다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우선권 회복 신청 시 해당 수리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texts/restoration.html> (한국어)

출원인은, 지정관청이 해당 신청을 수리하고 관련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단계에서도 우선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49 의 3.2). 이러한 신청은 PCT 제 22 조에 따른 적용 가능한 기한으로부터 한 달 내에 각 해당 지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링크의 우선권 회복 표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우간다 등록서비스국, 국제출원을 전자적 형식으로 접수 및 처리 예정

유럽 특허청: **PCT 조사료 및 예비심사료 75% 감면 자격 조건 변경**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노르웨이 산업재산청

아일랜드: **PCT 출원을 국내특허출원으로 취급하는 것에 관한 신규 법령**

### PCT 정보 업데이트

AZ 아제르바이잔 (수수료)

CR 코스타리카 (수수료 감면)

EP 유럽 특허청 (수수료)

ID 인도네시아 (통신 수단, 수수료)

IT 이탈리아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가능 기관)

KG 키르기스스탄 (수수료)

MA 모로코 (수수료)

NL 네덜란드 (팩스번호)

RO 루마니아 (수수료)

SA 사우디아라비아 (관청명, 위치 및 우편주소, 전화/팩스 번호, 이메일/인터넷 주소)

**TN** 튀니지 (수수료 발효일 - 내용정정)

**UG** 우간다 (전자출원)

조사료 (유럽 특허청 및 이스라엘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

보충적 조사료 (유럽 특허청)

예비심사료 (유럽 특허청)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유용한 도움말" 색인 일본어로 제공

**PATENTSCOPE** 소식

일본의 국내 특허문헌